
第9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7年2月26日(水) 午後2時

議事日程

1. 臺灣核廢棄物之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
2. 서울特別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서울特別市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서울特別市議會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서울特別市議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 서울特別市議會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7. 서울特別市議會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8.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部의 構成 및 運營等에 關한 條例案
12.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13. 97障礙人福祉基金運用計劃案
14. 97無償使用期間滿了地下道商街管理計劃同意案
15. 버스路線新設 또는 既存路線延長運行請願
16. 서울特別市教育廳傘下學校給食施設運營 및 圖書館相助會運營에 關한 行政事務調查要求의 件
17. 都市計劃案에 對한 議會意見聽取(7件)

附議된 案件

- o 報告事項 ... 3面

1. 臺灣核廢棄物之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金永姬 議員 外 14人 發議) ... 5面
2. 서울特別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 8面
3. 서울特別市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 8面
4. 서울特別市議會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 8面
5. 서울特別市議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 8面
6. 서울特別市議會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 8面
7. 서울特別市議會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 8面
8.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3面
9.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3面
10.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7面
11.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9面
12.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水資源管理委員會 委員長 提案) ... 22面
13. 97障礙人福祉基金運用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4面
14. 97無償使用期間滿了地下道商街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

市長 提出) ... 25面

15. 버스路線新設또는既存路線延長運行請願(林鍾化 議員 紹介) ... 27面

16. 서울特別市教育廳傘下學校給食施設運營및圖書館相助會運營에關한行政事務調査要求의件 (李英順 議員 外 50人 發議) ... 29面

17. 都市計劃案에對한議會意見聽取(7件)(서울特別市長 提出) ... 31面

(14時 39分 開議)

○議長 文一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제4차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o 報告事項

○議長 文一權; 議事擔當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金大根; 이번 회기중 접수 회부한 의안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홍은동 48번지와 217번지 일대에 대한 홍제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 등 의견청취안 4건으로 都市整備委員會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常任委員會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제출된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使用料調整同意案을 심사한 결과, 地方自治法 제130조제1항에 의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交通委員會에서 金成春 議員의 소개로 중구 장충동1가 101번지에 거주하는 설원식 외 19명이 제출한 일방통행로 시행 반대청원을 심사한 결과, 道路交通法 제4조 및 同法施行規則 제3조제1항에 의거 서울地方警察廳 소관으로 市議會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市議會에서 채택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市の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子源 議員님이 소개한 公有財産管理條例의 개정과 시유지 점용료 및 불하대금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공유지 점유 사용요율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어 줄 것을 中央部處에 건의중이며,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黃好淳 議員님이 소개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九老區廳長에게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바, 당초 요구한 건립부지는 체비지로 市로부터 區에 이관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향후 九老區의 부지확보 및 건립계획에 따라 保健福祉部에 건립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비 지원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朴贊秀 議員님이 소개한 시립병원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부지 물색 등을 추진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 간사선임시 미선임한 水資源管理委員會 민주당 간사에 李建行 議員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議長으로부터 종로학원의 이전, 신규등록, 분원 설립과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채권사항, 임시이사에 관한 서울市教育廳의 지도 감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臺灣核廢棄物의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金永姬 議員 外 14人 發議)

(14時 4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臺灣核廢棄物의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金永姬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姬 議員; 신한국당 소속이며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金永姬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제18조에 의하여 1997년 2월 18일 본의원 외 14인의 의원 발의로 제92회 임시회 生活環境委員會 제5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臺灣核廢棄物의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 1월 27일 대만 외교부는 대만 핵폐기물을 북한지역에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정부는 이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식 촉구하여 한반도의 핵폐기물 오염 긴장을 유발하였습니다.

대만정부는 핵폐기물 처리 처분에 대한 북한의 기술경험이 전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핵오염 방지를 위한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협약과 자국내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바젤협약, 그리고 핵폐기물은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는 런던협약 등으로 자국내 핵폐기물은 절대로 외국에 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약을 위반하면서 대만정부와 북한정부는 핵은 생명을 앗아가는 사신이라는 핵폐기물 오염지역 주민의 피맺힌 절규도 외면한 채 상호간 핵폐기물 수출·입협약을 체결하여 92년 단교한 대만정부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만정부는 산업화정책으로 인한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가동한 진산, 귀성, 마안산 원자력발전소 6기 원자로에서 발생한 200L 기준 9만 8,000드림의 중저해 핵무기 핵폐기물을 대만 란위섬에 보관하면서 란위섬 주민들이 방사능 핵오염으로 주민 사이에서 20의 저능아 발생과 신체불구자 등 원자력 피해가 계속 증가되자 대만 란위섬 주민들도 誓死反核이라는 구호로 핵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분노가 충천하고, 대만 地方自治團體의 반발이 거세어 새로운 핵폐기물저장고 지역선정과 건설이 불가하여지자 대만 핵폐기물 6만 배럴을 북한 경협차원에서 북한지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하여 외국 산업쓰레기 핵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1994년 서해안 굴업도에 대한 우리 政府의 핵폐기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북한정권은 대남방송을 통하여 북한 서해안 코앞에 죽음의 쓰레기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북한정권은 비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特別市議會는 대만정부의 북한지역에 대한 대만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수출을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中央政府에서 한반도의 원자력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

여 대만 핵폐기물 수출 철회를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원자력 핵 오염방지를 위하여 中央政府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주기를 제안하는 결의안의 내용으로서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하여 외국의 산업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대만정부의 대만 원자력발전소 진산 1호기, 원산 4호기 핵폐기물 6만배럴의 북한 수출은 중지되어야 하고, 대만정부는 1990년 IAEA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을 준수해서 핵폐기물 국외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북한의 외국 핵폐기물 산업쓰레기 수입 매립에 따른 한반도 오염방지를 위하여 북한은 핵폐기물 외국산업쓰레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서울特別市議會는 한반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中央政府에서는

1. 국제민간단체와 연계한 국제여론 조성과 대만정부와 북한의 핵폐기물 수출입을 저지, 외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1. UN과 IAEA에 핵폐기물 안전성에 대한 북한의 무경험과 환경오염문제 제를 제기하여 대만의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을 저지하는 외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1. 대만 핵폐기물에 대한 대만정부의 북한 지역 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만제품 불매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

1. 대만정부 스스로 1990년 IAEA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을 준수하여 실천할 것을 외교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제안하고 예비심사한 臺灣核廢棄物의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臺灣核廢棄物의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대만핵폐기물의북한수출철회촉구결의안

(뒤에 실음)

2. 서울特別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3. 서울特別市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4. 서울特別市議會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5. 서울特別市議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6. 서울特別市議會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7. 서울特別市議會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14時 4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제2항 서울特別市議會倫理

委員會構成決議案과 제3항 서울特別市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과 제4항 서울特別市議會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과 제5항 서울特別市議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과 제6항 서울特別市議會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제7항 서울特別市議會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運營委員會 車星煥議員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星煥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運營委員會와 建設委員會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車星煥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特別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및 地方自治發展·災害對策·環境保全對策·女性·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등 6개 特別委員會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議會 議員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돼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서울特別市議會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地方自治法 제79조 내지 제81조 등의 규정과 서울

特別市議會會議規則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제50조 및 同法施行令 제20조의3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를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特別市議會在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의 권한을 강화하고, 地方議會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地方議員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화 시대에 걸맞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特別市議會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特別市議會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特別市議會在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련 서울特別市 행정업무 지도와 지진, 한해, 풍해, 수해,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 서울特別市 재해대책 행정업무에 대하여 議會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 업무를 지원하고 서울特別市의 재난업무처리 제도개선을 위하여 地

地方自治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特別市議會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特別市議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고유황유사용, 저질무연탄 사용, 특히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수와 산업체 폐기물 등에 의한 수질오염은 생태계 파괴 등 환경을 심각히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해 地方自治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문제를 단일창구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 유희인력의 활용 극대화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여성복지수준의 향상과 여성사회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해 地方自治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特別市議會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결의안은 서울의 자동차는 90년 100만대에서 96년말 현재 217만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도권권의 주간유입, 인구증가 등으로 서울의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차량통행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당면과제인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地方自治法 제50조 및 同法施行令 제20조의3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交通對策特別委員會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 도로 그리고 警察廳 관련사항인 신호등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가결하여 해당 特別委員會에서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제안설명하여 주신 서울特別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외 5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6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뒤에 실음)

.....

8.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9.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56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鄭水華議員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梁敬淑 議員 이의 있다고 말했잖아요. 議長, 발언권을 주세요.)

○鄭水華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鄭水華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제 92회 臨時會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서울 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 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은 첫째, 서울 特別市 本廳 2·3급 局長인 財務局長, 都市計劃局長, 住宅局長, 道路局長, 下水局長 등 다섯 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서울 特別市 本廳 서기관급 課長인 監査課長, 民願擔當官, 施設計劃課長, 再開發課長, 都市景觀課長, 建築指導課長, 住宅改良課長, 都市開發課長, 道路管理課長, 綠地課長, 民防衛課長 등 17명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증원되는 것이며, 둘째, 직속기관에서는 公務員敎育院 5급 9명, 農村指導所 41명, 지도관 2명, 지도사 39명입니다. 서울市立大學校 273명 등 총 339명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증원되고, 또한 소방직 공무원에 있어서 中部消防署 관내 회현파출소 요원 22명, 瑞草消防署 관내 우면파출소 요원 22명, 永登浦消防署 관내 서울 特別市 시계 강동대교에서 행주대교간 수상구조대 요원 18명 등 62명의 지방공무원을 증원하여 서울 特別市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후 97년 1월 1일 현재 잔존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本廳 9명으로 行政1副市長과 行政2副市長, 1급 企劃管理室長 1명, 2.3급 4명, 監査室長, 保健社會局長, 地域經濟局長, 民防衛災難管理局長입니다.

4급 2명, 豫算總括課長, 非常計劃課長입니다. 직속기관 2명, 消防本部長 소방정감 1명, 消防學校長으로 소방감 1명 그렇게 해서 2명이 되고,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남게

되는 25개 自治區의 副區廳長 25명으로 城北區, 盧原區, 恩平區, 江西區, 冠岳區, 江南區, 松坡區, 江東區 副區廳長은 2급 이사관으로, 기타 17개 自治區는 3급 부이사관으로 존치되어 서울特別市長 산하 국가공무원은 36명만 존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은 첫째, 서울特別市 인구의 2.1%가 되는 21만 7,000명의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둘째, 종교단체의 의료업, 유료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감면하여 준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재 시세감면을 26.6%로 시행하여온 쪼차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을 91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하되, 97년은 시세감면율을 13.3%로 축소 감면 조정하였으며,

넷째,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주택의 승계취득은 시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해 사용한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자와 5년 이상 재래시장 임대입점 사업자의 재래시장 재건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부동산 매매의 경우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시세감면율을 20/100에서 10/100으로 축소하였으며, 일곱째,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 각 조문에 단서로 규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경감받은 후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 신고납부

또는 추정하도록 조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 개정으로 지방세 세금면제혜택은 장애인은 약 3억원, 서울特別市 시장 458개 중 202개소의 재래시장은 약 39억원이 경감이 되고, 검인계약서 사용으로 약 350억원이 증세가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에 등록된 6만 4,480대의 짚차형 자동차세는 약 62억원이 징수되어 총 370억원의 세금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으로서 취득세는 97년에 서울特別市 일반회계 예산액 5조 8,900억원 중의 13%인 7,871억 7,400만원 규모가 되고, 등록세는 97년 예산 일반회계의 21%인 1조 2,158억원 수준으로 취득세는 96년보다는 7.5%, 등록세는 약 30%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예비심사의결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이 원안가결되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10.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0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金鍾來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 議員; 生活環境委員會 所屬 金鍾來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本議員이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한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生活環境委員會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조례개정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개정사유는 산업환경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용자대상업체 선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과 종래의 일반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패션, 디자인, 소프트
웨어 등 서울형 산업의 육성.

지원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용자대상범
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자대상범위 확대
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
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금운용
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시설자금과 같이 운전자금도 용
자대상업체의 선정 및 용자금액 사정업무의 객관성 부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 위탁하였
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자,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용
자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종래 일반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서울형 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대상
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사를 거쳐 同 改正條例案을 만장일치
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

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11.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0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尹鍾一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鍾一 議員;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尹鍾一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水資源管理委員會를 대표하여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에 自然災害對策法이 제정되었고, 이어 同法施行令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

特別市災害對策本部를 구성하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市長을 本部長으로 하고, 行政2副市長이 次長, 總括調整官은 企劃管理室長, 統制官 및 擔當官은 災害別 主務局長·課長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한 집행 및 기타 재해예방, 응급대책, 복구 등에 관한 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운영 및 기능으로는 의장은 재해가 발생할 때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에 대한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條例案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서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은 自然災害對策法施行令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民防衛基本法은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법으로 同法 제6조에

서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條例案 제3조에서는 施行令上에 규정된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으므로 상위법인 大統領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기로 수정하였고, 또한 條例案 제3조제2호에서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것을 명기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의 의결은 잘못되었고, 협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어 의결을 협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던 것인바, 여러 議員님께서도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을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關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12.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水資源管理委員會 委員長 提案)

(15時 1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鄭炳權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炳權 議員; 水資源管理委員會 소속 鄭炳權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條例改正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14일 서울特別市長이 한강공원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겠다는 동의안을 본 議會에 제출한 바 있고, 이에 우리 委員會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을 地方自治法 제130조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條例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條例을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의원입법으로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우리 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 本會議에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條例으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 조정시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징수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의무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民主的 절차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사용료 금액 및 조정 결정사항을 條例에 직접 규정하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하여 民主的 절차로 정해진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議會의 의결을 얻어 市長이 고시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條例에 사용료를 직접 규정하고, 둘째, 사용료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네번째는 사용료징수, 과태료징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제안한 서울特別市漢江公園
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關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13. 1997障碍人福祉基金運用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20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7障碍人福祉基金運
用計劃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劉俊相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俊相 議員; 保健社會委員會 소속 劉俊相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그리고 先輩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제92
회 臨時會 기간 중 保健社會委員會 소관 97障碍人福祉基金運
用計劃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동 안건은 地方財政法 제110조 및 서울特別市障碍人福祉基
金設置및運用條例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서울特別市議會의

의결을 거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一般會計로부터 전입된 30억원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시중은행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2월 18일 우리 保健社會委員會 제1차 회의에서 執行部の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동 안건을 우리 委員會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本 委員會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同僚 議員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障碍人福祉基金運用計劃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97장애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

(뒤에 실음)

14. 1997無償使用期間滿了地下道商街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2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7無償使用期間滿了地下道商街管理計劃同意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建設委員會 車星煥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星煥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松坡 제6선거구 출신 建設委員會 소속 車星煥 議員입니다.

本議員이 오늘 97無償使用期間滿了地下道商街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하여 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1997년 2월 6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동의안의 내용은 서울시내 민간 자본이 건축하여 市에 기부채납한 30개의 지하도 상가 중 이미 施設管理公團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지하도 상가 외에 97년도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방산, 충무, 소공2차, 종로5가, 영등포시장 앞, 을지로입구, 종로4가, 남대문지하도상가의 관리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서울特別市施設管理公團에서 관리하도록 동의하는 내용으로서, 서울特別市施設管理工團設置條例 제14조제2호에서 서울特別市の 시설이나 지하상가를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特別市議會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建設委員會에서는 심사과정에서 執行部の 계획을 검토한 후 지하상가 관리를 施設管理公團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無償使用期間滿了地下道商街管理計劃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97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

(뒤에 실음)

15. 버스路線新設또는既存路線延長運行請願(林鍾化 議員 紹介)

(15時 2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버스路線 新設 또는 既存路線 延長運行 請願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交通委員會 李允中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中 議員;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 저를 도와

주신 議員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交通委員會 소속 麻浦 제3선거구 출신 李允中 議員입니다.

議案番號 제52번인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노선 연장운행 청원에 대하여 本會議에 심사보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本 請願은 지난 96년 12월 17일 林鍾化 議員으로부터 소개되어 本會議에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에 麻浦區 望遠洞 제1유수지를 경유하던 331번 시내버스가 폐선되어 5만여 住民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請願은 지난 94년에도 本會議에 채택되어 서울市の 行政命令으로 東南交通에서 버스 10대를 배차.운행토록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즉, 望遠1洞 제1유수지를 기점으로 하여 孔德洞 로터리까지 노선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현재 운행중인 버스노선 302번을 망원동유수지를 경유하도록 路線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交通委員會에서는 現場點檢과 專門委員 檢討報告, 執行部 意見을 청취한 후 이 청원이 반드시 채택되어 사후조치까지 우리 議會가 관심을 갖고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全員 贊成 議決로 本會議에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本 請願이 심도 있는 검토 후 本會議에 상정된 것이므로 여러 議員님께서 交通委員會의 審査報告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노선 연장운행 청원을 交通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노선 연장운행 청원 의견서

(뒤에 실음)

16. 서울特別市教育廳傘下學校給食施設運營및圖書館相助會運營에關한行政事務調查要求의件

(李英順 議員 外 50人 發議)

(15時 2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特別市教育廳傘下 學校給食施設 運營 및 圖書館相助會 運營에 관한 行政事務調查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本 案件은 李英順 議員 외 50人으로부터 發議된 案件입니다. 그러면 李英順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順 議員; 九老區 출신 文化教育委員會 李英順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特別市教育廳 산하 학교급식시설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본 文化教育委員會에서 학교내 도시가스시설 이전과 서울시教育廳 산하 초등학교 給食施設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의사결정과정과 물품구입에 대한 난맥상 등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위의 문제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特別市教育廳 산하 21개 圖書館에서 相助會를 운영함에 있어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21개 도서관 상조회에서는 도서관 매점 등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 등이 열람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기 보다는 관련직원들의 복지향상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便法과 脫法 慣行로 운영되어 왔으며, 鍾路學院 등 대형학원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여론에서도 그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바, 차제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바로잡고 그 개선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제안설명하여 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과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뒤에 실음)

17. 都市計劃案에對한議會意見聽取(7件)(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3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都市計劃案에 대한議會 意見聽取 7件을 일괄해서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都市整備委員會 崔鍾根 議員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根 議員; 안녕하십니까, 東大門區 제4선거구 출신 都市整備委員會의 崔鍾根 議員입니다.

本議員이 文一權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2회 臨時會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한 都市計劃案에 대한議會 意見聽取의 件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의견청취건은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變更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案, 또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따른 公園決定案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地方自治化時代에 따라 실시하는 自治區 都市基本計劃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에 좇아 서울市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와 적절한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市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議案番號 제661번 城東區 馬場洞 572-19와 572-10 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 청사)결정 및변경결정건 외 6건에 대해서는 市長의 결정안에 원안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現地確認이 꼭 필요하거나 法令의 검토가 더 요구된 西大門區 延禧1洞 산 75-1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건 외 4건에 대해서는 다음 會期에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都市計劃案 審査報告書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 意見聽取 7건을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市議會의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뒤에 실음)

.....
○議長 文一權; 진행도중에 梁敬淑 議員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계속 안건처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梁敬淑 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梁敬淑 議員; 鍾路區 출신 梁敬淑 議員입니다.

조금 전에 議長님께서서는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交通委員會 몇몇 의원들이 분명히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별위원회 6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은 本會議에서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되고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의원은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議長님의 이러한 진행이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면에 대해서 매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議會 내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서울시議員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며, 서울市政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며, 서울市民들의 의견을 어떻게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특위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특위 구성은 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며,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에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인설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議會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위구성은 6개를 만든다, 9개를 만든다 하면서 委員長 내정자는 누구며, 어떤 의원은 어느 특별위원회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특별위원회에 대한 신청도 없었고,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마구잡이로 임의적으로 특위위원을 배정하고, 委員長을 내정하고 幹事를 내정하는 이러한 議會 운영은 참으로 비민주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구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정말 목적에 부합하고 반드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활동하지 않

을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의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명함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특위를 6개 만 든다고 그래도 임기 1년 반에 6개월씩 돌아간다고 해도 18명이 委員長으로 내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議長께서 추천, 임명하는 이러한 18명의 특위 委員長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특위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번 특위구성은 그 동안 관행으로 본다면 각 黨의 의총을 통해서 특위를 몇 개 구성하고 언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구성 만큼은 이러한 좋은 관행조차도 무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議會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비밀 첩보작전입니까? 의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6개 특위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본인이 어떤 특위에 배정되었는지 알고 계신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단이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한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交通委員會가 엄연하게 있는데 어디에서 교통 특별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수돗물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건설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재무특별위원회, 경제특별위원회 다 구성해야지 많은 의원들한테 좋은 자리가 많이 배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민주적인 특별위원회 배정과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까지 이미 배정이 되어 있던 이러한 특위구성이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는 의

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했습니다.

오늘로서 10일간의 회기로 제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97년도 서울시 및 敎育廳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가 뒷받침되어서 올해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성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43分 散會)

○出席議員 124人

慶奎福	高光哲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坤
金明炫	金芳任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子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金玉源	김장주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天柱
金亨吉	金喜甲	羅太均

盧永奭	盧載東	文龍子
文八卦	閔庚燁	閔相今
閔鍊植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一男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垞植	安秉昭	安順德
梁敬淑	魚潤慶	呂鼎九
劉大運	柳德烈	劉俊相
尹福永	尹鍾一	李康玉
李康珍	李建行	이금라
李基連	李斗鶴	李善宰
李成浩	李始英	李亮漢
李英順	李容富	李允中
李子源	李廷義	李智文
林靜枝	張夏雲	張壽完
田炳萬	鄭炳權	鄭福辰
鄭善順	鄭水華	鄭鎮宇
鄭鎮澤	鄭泰宗	鄭韓植
鄭海純	趙上男	趙相勳
趙旬衡	池龍鎬	池昌洙
車星煥	崔光雄	崔永運
崔鍾午	崔俊和	崔昌奎
崔炯莘	黃炳五	黃仁明

黃正植 崔鍾根 金洙福
 黃好淳 洪樂元 洪性龍
 洪淳喆 洪承采 洪月杓
 金錫浩 金亨根 白懿宗
 孫 馥 吳世根 劉起鍾
 金箕英 文一權 李聲九
 李載震 張精一 鄭址弘
 崔鍾德

(서면답변서)

○崔光雄議員

(質疑要旨)

□지하철 과업시 역무지원을 위한 시공무원 투입의 법적 근거와 관련

。시공무원의 투입시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과건명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역무지원 근무명령을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

(答辯)

□그 동안 지하철노조의 전면파업은 '89년과 '94년, 그리고 지난해 연말과 금년1월 15일 등 총 4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전동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시민교통불편은 물론 도시기능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야기되기 때문에 시민의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등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시직원

을 근무시켜 역무가 정상화되도록 근무명령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철과업시 우리 시의 교통관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명령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처리는 인사과에서 하겠습니다.

(質疑要旨)

。 6급이하 직원들이 행정법규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므로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방법을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答辯)

□지방공무원법상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방법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방법중에서 택일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3년까지 시험과 심사를 50%씩 병행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 이를 통하여 행정법규 등에 관하여 이론과 서로무를 겸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반면에 승진을 위한 시험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장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심사승진 방법이 도입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경우와 같이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방법을 전원 심사승진으로 변경것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급이하 공무원의 행정법규에 대한 숙지도와 직무능력을 높여야 한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80년이후 고시인력의 증원과 함께 자질이

우수한 7급이하 공무원을 확대 채용하여 왔으며, 공무원교육원 실무교육과정에 행정법규를 포함하여 꾸준히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5급 승진시험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5급승진을 심사방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6급승진 방법에 한하여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6급이하 승진방법에 대하여는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質疑要旨)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에 대한 획기적이며 종합적인 개선대책은?

(答辯)

□우리 시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비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결정 등 투자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시구간 시설보수관리기준이 맞지않아 시비투자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도로, 하수도, 공원 등 개별사무별로 시구비 부담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와 구간의 부담기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과 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質疑要旨)

。자치구별 투자 불균형과 관련하여

- '96년도 특별교부금 배분에 있어 자립도 6위인 종로구가 75억원, 자립도 5위인 영등포구가 60억 등 재정자립도와 재정규모가 최하위 3개구인 도봉, 강북, 금천보다 훨씬 많이 배정되었음.

- '95년 5월 30일 20m이상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등의 권한을 구로 위임한 후에 원칙이 없이 용산구 및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등에는 보도정비, 육교설치, 지하보도 설치 공사비 등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반면, 도봉구가 관리하는 서울의 북부관문 보도정비 특별교부금 신청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는 지적 및

- 나무부의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사업중에 지방재정지원 조정제도 개선이 들어있는 바, 특히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40%에도 미달하는 도봉, 강북, 금천구의 재정개선을 위해 보조금제도 개선, 교부세법 개정 건의 및 지방양여금 바분단체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시구가 함께 추진하자는 건의 (答辯)

□ '96년도에 배부된 특별교부금이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실이나, 그 사유는 조정교부금 중 재정력에 따른 배분은 주로 보통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재정력도 고려하여 배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당해도에 발생한 특정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종로구나 영등포구의 경우는 '95.10.31. 시의회 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 보통교부금을 산정한 결과여타 대부분의 구는 보통교부금이 늘어난 반면, 종로구 40억, 영등포구 100억 등 대폭 감소되는 구였으며, 이는 보통교부금의 부가

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 금년도 특별교부금 1차분 500억원 배분 시 도봉, 강북, 금천구와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구는 30억원 씩, 재정력이 나은 영등포구는 10억을 지원하는 등 재정력에 따라 차별화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도봉구의 도봉로 보도정비사업비를 '96, '97년도에 계속 신청하였지만 배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사업 선정시 자치구에서 정한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한 결과이며, '97년도의 경우 도봉구의 지원요청 사업 4건중 도봉로 도봉구청사 건립비 20억, 덕성여대뒷길 도로건설비 5억, 청소시설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력 취약구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정부에 대한 교부세법 및 양여금법 개정건의와는 별개로 우리시에서는 재정력 취약구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저개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를 늘일 수 있는 방안 및 가산교부율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배분방법 개선 등을 자치구와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質疑要旨)

。의회협력관계 신설을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감안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예를 들어 의원자료요구의 경우 사무관직급인 의회협력계장이 각 국장들에게 독촉하는 것은 불가능함.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장급 의회협력관 신설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

려운 실정임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보다 신속히 제출하는 등 실무적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에 실무인력 보장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 국간의 의회협력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이 이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요구자료 제출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洪性龍議員

(質疑要旨)

난곡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도로만으로는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①현재 20m도로 확장과 ② 경전철 건설계획 ③제3기 지하철건설 계획에 포함 교통문제를 해결할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答辯)

。 난곡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이대에 2,609동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아파트 4,800여 세대를 2000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입니다.

。 동 지역의 교통대책으로 난곡입구에서 사업단지까지 폭 20m 도로의 확장건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확장계획은 없으나 해당지역 재개발추진중인 4,800여 세대가 준공될 때 동 도로는 확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악구 및 관계부서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난곡길 남측으로 산북도로와 연결되는 신림에서 안양간 도로개설공사(폭 20m, 연장 2,080m, 사업비 621억원)는 '96.12월 발주, 2000년 6월 완공목표로 현재 시행 발주, 2000년 6월 완공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어 동 사업이 준공

되면 이 지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제3기 지하철 건설이후에도 신림, 봉천, 삼양동 지역 등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 말씀하신 신림, 난곡지역도 이러한 지하철 이용 불편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 이러한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약 100km의 경전철 건설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변경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시에서는 동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및 중차, 순환버스나 마을버스 등 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子源 金種求議員

(質疑要旨)

한보그룹관련 서울시 공사현황

(答辯)

。 한보계열사가 시공하고 있는 우리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명, 계약방법, 공사기간, 시공호사, 공사진척 사항등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書面答辯書)

(뒤에 실음)

.....